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50 |
|----------|-----|

제출연월일 : 2021. 6. 3.

제 출 자 :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중 선순위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선순위자 요건을 삭제하여 유족 또는 가족이 감면받도록 하여 국가보훈처 및 대구광역시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가 제외되었으나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보훈처의 요청사항을 반영하며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27호)의 개정으로 졸업증명서 등 교육에 관한 증명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순위자 요건을 삭제 (안 제8조제1항제5호, 제6호, 제9호, 제10호)
-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신청·등록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신설(안 제8조제1항제11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가족의 신청·등록 제증명 등의 수수료 감면 신설 (안 제8조제1항제12호)
- 교육에 관한 증명을 삭제 (안 별표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 조문대비표 : 붙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
- (3)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27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1. 4. 12. ~ 5. 3.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6) 조례·규칙 심의 결과 : 원안의결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서구(이하“구”라 한다)”를 “서구”로,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을 “제증명”으로 한다.

제2조 중 “제증명 등”을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중 “제증명등”을 “제증명 등”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수수료의 감면등”을 “수수료의 감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로, 같은 호 및 제2호 중 “제증명등”을 각각 “제증명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을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같은 호 및 제10호 중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을 각각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준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별표1 중 구분의 증명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u>서구(이하“구”라 한다)</u>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u>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u>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 <p>제1조(목적) ----- -- <u>서구</u>----- ----- ----- ----- <u>제증명</u> ----- ----- -----.</p> |
| <p>제2조 (적용) <u>제증명 등</u>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p> | <p>제2조(적용) <u>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u>에서 발급하는 <u>제증명과 인·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따른 제증명(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u> ----.</p> |
| <p>제3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u>제증명등</u> 수수료액은 별표1,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p> | <p>제3조(요율) ----- <u>제증명 등</u> ----- ----- -----.</p> |
| <p>제8조 (<u>수수료의 감면등</u>) ① 다음 <u>각호</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p> <p>1.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2</p> | <p>제8조(<u>수수료의 감면 등</u>) ① ---- <u>각 호</u>----- ----- -----.</p> <p>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p> |

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개정 2001.12.31, 개정 2013.02.20, 개정 2015.07.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삭 제

4. (생 략)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7.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2조제2호-----
----- 제증명 등-----

2. -----

----- 제증명 등-----

4. (현행과 같음)

5. -----

----- 유족 또는 가족-----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 유족 또는 가족-----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관내
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
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이 관내에
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
당)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
는 제증명 등

<신 설>

<신 설>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
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 유족 또는 가족-----

10. -----

----- 유족 또는 가족-----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
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
하는 제증명 등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
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③ (생략)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관련)

| 구분 | 기준 | 수수료 | 비고 |
|-----------------------|----|------|----|
| 〈증명〉 1.~3. (생략) | | | |
| 4. 교육에 관한 증명 | | | |
| 가. 성적 및 졸업증명서 | 1통 | 300원 | |
| 나. 검정고시 성적 및 합격증명서 | 1통 | 300원 | |
| 다. 학교생활기록부 | 1통 | 300원 | |
| 5.~6. (생략) | | | |

②·③ (현행과 같음)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제3조관련)

| 구분 | 기준 | 수수료 | 비고 |
|------------------------|----|-----|----|
| 〈증명〉 1.~3. (현행과 같음) | | | |
| 4. 삭제 | | | |
| 5.~6. (현행과 같음) | | | |

【관계 법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8. 4.] [법률 제11029호, 2011. 8. 4.,]

제73조의2(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제5호·제6호·제13호 또는 제1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이하 이 조에서 “사망 또는 상이”라 한다)를 입은 자 중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제4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직을 한 경우 또는 공상기준(公傷基準)에 준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사망한 자의 유족 또는 상이를 입은 자와 그의 가족을 제9조, 제11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은 보상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그 보상의 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는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판정된 신체의 장애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5항·제5조·제7조·제10조·제78조·제79조·제80조제1항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7. 1]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부칙 <제11041호, 2011. 9. 15.>

제12조(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종전의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등록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등록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시행 2020. 9.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127호, 2020. 9. 22.」

제12조(수수료 등의 징수 및 정산) ① 이 지침에서 규정한 민원문서의 수수료는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교부기관에서 징수하되 건당 수수료가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리기관 세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기관의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경우 소재지 자치단체에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적용하고, 학교민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부장관 등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 별표 7의 금액(수수료 및 업무처리비)으로 한다.

[별표 7] 학교민원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제12조제1항 관련)

| |
|---|
| <p>1. 수수료 :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 등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부 소속 고용센터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과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 수수료 무료)</p> <p>2. 업무처리비 : 사립대학 소관 민원은 건당 1,000원 (그 외의 학교민원은 업무처리비 없음)</p> <p>- 업무처리비를 징수한 교부기관은 다음 달 20일까지 정산하여 해당 민원을 처리한 사립대학에 직접 송금 후 통보</p> |
|---|

[별표 7] 학교민원 수수료 및 업무처리비 개정 전·후

| 개정 전 | 개정 후 |
|---|---|
| <p>1. 수수료 :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 등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당 300원(다만, 고용부 소속 고용센터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과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 수수료 무료)</p> <p>2. 업무처리비</p> | <p>1. 수수료 : 관련법령 또는 교부기관 조례 등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금액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수료는 받지 아니한다.(다만, 고용부 소속 고용센터에서 접수하여 처리하는 민원과 교육부 소관 국립의 각급 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 수수료 무료)</p> <p>2. 업무처리비 (현행과 같음)</p> |